

# 무엇이든 물어보세요~!

**Question** 디자인권(무심사디자인)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?

**Answer**

- 이의신청이란 등록된 디자인(무심사)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표시행위를 말합니다.(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2)
- 이의신청제도는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.

**가. 이의신청절차**

- 이의신청은 「누구나」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기간은 「디자인무심사등록 출원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 공고일 후 3개월」이내입니다.
-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.(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3)

**나. 이의결정**

- 이의신청이유에 의거하여, 디자인등록 될 수 없었던 창작에 디자인이 등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은 디자인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취소예고통지를 하여 디자인권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.
- 의견진술에 의거 취소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디자인권 유지결정이 내려지고, 디자인이의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허청은 디자인권유지결정을 하게 됩니다.
-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권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회를 부여한 후에 이의결정을 하며 이 이의결정 중 취소결정에 대해서만 특허 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.

**Question** 이의신청기간은 언제이며, 연장가능한지요?

**Answer**

- 디자인(무심사)이의신청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이며, 이의신청기간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으며,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(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2)

**Question**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를 보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?

**Answer**

- 이의신청서의 보정이나 보충은 “보정서”를 이용하며, 기타 이의답변서나 이의신청중간서류 등의 보정이나 보충 시에는 답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의견서를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.

출처 특허청 홈페이지

